

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행정기관의 「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」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월1회 동시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(토요일휴무제 도입)
-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 일수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. (연가수혜범위 확대)

□ 주요골자

-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월1회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.
(안 제16조의2제1항)
-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「연가일수에서 휴직 일수를 바로 공제」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「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」토록 함
(안 제20조제1항)

$$\text{※ 휴직자의 연가일수} = \frac{12(\text{월}) - \text{당해연도 휴직기간(월)}}{12(\text{월})} \times \text{당해연도 연가일수}$$

-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('01년 6월)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. (안 제22조제5호)

□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「주5일 근무제」 시범실시와 휴직자의 연가수혜 확대등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,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(2001. 6. 30)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적합성이나 내용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- 다만,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민원업무 공백을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